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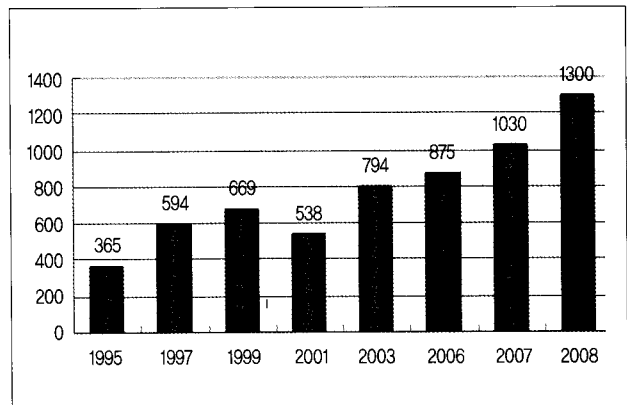
무역기술장벽에 수출업체 대비 절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말한다.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이 전년도에 비해 30%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의 대비가 시급하다.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는 신규 TBT가 올해에는 작년의 1,030개에서 30% 증가한 1,300개에 달한다.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과 달리 무역기술 장벽은 기술적 내용이 주가 되어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에서도 별도의 준비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일반무역장벽은 WTO에 의해 엄격히 감시되고 통제되지만 기술 장벽은 현실적으로 무역장벽으로 분류되지 않아, 각국은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 등의 표면적 목적을 내세워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도입하고 있다. 많은 경우 기술 장벽을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여파로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여 내년에는 신규 무역기술장벽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향후 3년간 30억의 예산을 들여 TBT 종합포털시스템을 확충하여 신규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해당업체와 단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교역국의 법령, 제도 및 표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분석과 수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WTO / TBT 통보현황 (건)〉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 후, 교역량 확대, 교



역국 다변화를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관세 및 수량제한 등 기존 무역장벽은 철폐·완화되는 반면에 무역기술장벽(TBT)이 통상 현안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 중심으로 보건·안전·환경 관련 기술규정, 표준이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한다.

WTO/TBT 협정에 의거하여 세계 각국은 신규 또는 개정되는 기술규제에 대하여 연간 1000건 이상의 TBT로 통보되나, 이에 대한 대응미숙이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특히 대외요인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가중한 부담이 된다.

2008년에는 통보 문이 급증하여 1300건에 이르며,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사용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에 대한 통보 건수가 급증한다. 세계적으로 중국산 완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각국에서 완구를 포함한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2008년도 주요 무역기술장벽을 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는 2008년 8월14일 통과된 “2008 소비자제품 안전개선법”에 근거해 '08년 11월 12일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제3자 적합성 인증을 의무화한다.

현재까지 미국어린이용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기술연구소, SGS,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어린이용과 성인용 구별이 어려워 인증서 발급이 일반용품으로 확대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해당기업에서는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수입제품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16개 기관을 적합성인증 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우디에 통보 및 사우디로부터 승인 완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모든 공산품(의약품 및 일부 품목 제외)은 상기 적합성인증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과 달리 무역기술 장벽은 기술적 내용이 주가 되어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에서도 별도의 준비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일반무역장벽은 WTO에 의해 엄격히 감시되고 통제되지만 기술 장벽은 현실적으로 무역장벽으로 분류되지 않아, 각국은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 등의 표면적 목적을 내세워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도입하고 있다.

기관으로부터 선적 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사우디 항만에서 통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소비자보호 및 강판의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품은 국내 6개 업체가 생산, POSCO 등 3개 업체 총 2천만불 對인니 수출(07년 자료)했다. 인니 산업부와 WTO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중간재로 사용되는 자동차용·가전용 강판에 대해서는 강제인증대상 제외를 요구했다. 인니 산업부는 아국의 요구에 따라 전자재용 강판에만 강제인증을 적용할 것을 최종 발표(08.8)하여 국내업체의 자동차용 강판의 對인니 수출 길을 확보했다.

중국은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방화벽 등 관련 13개 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ISCCC)의 도입을 발표하고, 제품의 기술기준 및 사후감독 등 강제인증을 위한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하는 기술규정(안)을 공표(08.3.3)했다. 중국측 및 WTO 차원에서 동 조치 목적의 정당성, 제정절차의 투명성, 기술정보 유출

등을 문제 삼으며, 국제규범을 벗어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중국 수출규모(87여억원)는 현재 미미하나, 향후 중국시장규모가 10년 8,400억원에 이르고 RFID와 디지털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될 경우 파급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적합성소위(08.11.28)에서 중국측은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시행을 전면 보류함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